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19. . . (제 회)	

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000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19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취급 및 처리 허용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허용

-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르면 민감정보, 고유식별번호 처리는 제한되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나, 주거실태조사 등 주거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민감정보, 고유식별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바 이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필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”를 “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”를 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 <신설></p> <p>3. 4. (생략)</p>	<p>제1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</p> <p>4.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-4129

**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(안)」에
대한 검토의견서**

담당자 : 〇〇부 〇〇과 〇〇〇 (☎ 000-0000-0000)

개 정 안	검 토 의 견	
	수정안	검토사유
		<p>○</p> <p>-</p> <p>○</p> <p>-</p>